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채권현재액 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 조기화〉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28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1. 채권현재액 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 조기화(안 제36조 및 제37조) ·· 3

Ⅳ. 입법의 재정영향 ····· 9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14.

다. 회 부 일 : 2026. 7. 15.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

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채권현재액 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 조기화 (안 제36조 및 제37조)

현 행	개 정 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36조)
○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채권현재액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채권현재액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함 (안 제37조 제2항)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안 제37조 제3항)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1], 「국회법」 제128조의2는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2].

「국회법」에서 결산 심의를 정기회 개회 전에 마치도록 한 것은

1)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정기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의에 시간과 역량을 보다 집중하고, 전년도 결산 심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안 심의에 보다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최근 5년간 결산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연도에 결산 심의가 정기회 개회 이후 완료되고 있어, 「국회법」의 취지가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 결산 심의 현황]

구분	정부 제출일	예결위 상정일	예결위 처리일	본회의 의결일
2024회계연도	2025.5.30.	2025.8.25.	2025.11.27.	2025.11.27.
2023회계연도	2024.5.31.	2024.9.2.	2024.11.29.	2024.12.2.
2022회계연도	2023.5.31.	2023.8.30.	2023.12.20.	2023.12.20.
2021회계연도	2022.5.31.	2022.8.29.	2022.11.7.	2022.11.10.
2020회계연도	2021.5.31.	2021.9.6.	2021.12.2.	2021.12.2.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929호)과, 이에 따라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의 국회 보고 기한을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다음 연도 5월 15일'로 앞당기기 위한 것임.

현행 「국가채권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별로 채권의 회계별·종류별 구분, 채권액의 증감 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 여부를 포함한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에 따라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3].

이에 각 회계연도의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재무제표 첨부서류로서 매년 정부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채권의 회계별·종류별·중앙관서별 규모와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국회의 결산 심사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 첨부서류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국회 보고 시기도 함께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 개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작성기한 및 감사원 검사보고서 작성기한에 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채권현재

---

3) **「국가채권 관리법」**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에 따라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의 회계별·종류별 구분
2. 채권액의 증감 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 여부

액 보고서 작성기간이 더 크게 단축되는데, 관련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단축 기한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재정경제부는 부처별 결산정보 등록 및 정정,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때 국회 보고시기 등을 단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진성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929호)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명 (의안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9호)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기한	정기회 개회 전까지	6월 30일까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7호)	각 중앙관서 장의 예비비사용명세서 및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 제출 기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의 예비금사용명세서 재정경제부 제출 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국가결산보고서 기획예산처·감사원 제출 기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3월 2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기한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5월 6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5월 20일까지)
	정부의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국회 제출 기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한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928호)	각 중앙관서 장의 채권현재액 보고서 재정경제부 제출 기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감사원 제출 기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3월 2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4월 10일까지)
	정부의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국회 보고 기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총선 실시 해에는 5월 31일까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① (생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 ③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

Ⅳ.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4)]

문 의 처
02)6788-5160

4)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